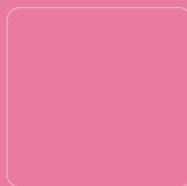


#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양미선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 양미선



#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양미선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 발간사

덴마크는 2016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재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덴마크가 일찍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공교육 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여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육아휴직 제도, 안전요소 등이 고루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초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하고 있는 세계 육아정책동향 시리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 호주와 영국, 2008년 미국과 캐나다, 2009년 핀란드와 프랑스, 2010년 뉴질랜드와 독일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을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계육아정책 동향시리즈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육아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 미 화

# 목차

1  
장

덴마크의 일반적 특성 • 1

1. 개요 • 1
2. 인구학적 특성 • 3
3. 경제적 특성 • 7
4. 교육제도 • 8

2  
장

관련 법 및 제도 • 11

1. 관련법 및 제도 • 11
2. 행정 및 전달체계 • 18

3  
장

덴마크 보육 · 유아교육 현황 • 20

1. 서비스 유형 • 20
2. 설치 및 운영 주체 • 22
3. 공급과 이용 • 24
4.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 30
5. 입소 절차 • 32
6. 보육 · 유아교육과정 • 34
7. 보육 · 유아교육 인력 • 35
8. 보육 · 유아교육 질 관리 • 38

# CONTENTS

## 4장

덴마크 보육 · 교육 비용 지원 • 40

1. 지원 개요 • 40

2. 보육료 • 43

3. 육아와 가족지원 • 47

## 5장

맺는 말 • 54

## 참고 문헌

• 56

## 부록

• 59



# 덴마크의 일반적 특성

한 국가의 법과 제도는 사회, 문화, 역사 등을 기반으로 형성, 발전된다. 덴마크의 보육·유아교육제도(보육·유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덴마크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요<sup>1)</sup>

덴 마크의 정식 국가 명칭은 덴마크 왕국(The Kingdom of Denmark)이며, 덴마크어로 단마르크(Danmark)라고 한다. ‘덴마크’란 어휘는 역사적인 인물 대니(Dani) 또는 접두사 dan에서 유래하는데, 평편한 숲(flat woodland)이라는 뜻이다. 로마황제 아우구스투스와의 전쟁 때, 덴마크 유테스(Jutes)인들은 왕의 아들 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승리로 텐을 왕으로 모시고 이름을 덴마크(Dania)로 명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이희숙, 2013).

덴마크는 북부 유럽 북해 연안지역(북위 54°~57°, 동경

1) 본 장은 주 덴마크 대사관 홈페이지(<http://dnk.mofa.go.kr>)와 두산백과사전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8°~15°)에 자리한 유틀란트(Jutland) 반도와 동쪽 해상의 407개 부속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자치령인 그린란드(Greenland)와 페로(Feroe) 제도를 두고 있다.

덴마크의 전체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 수준인 43,098km<sup>2</sup>이다. 국토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 빙하의 운반과 퇴적에 의해 만들어져서 평坦하고, 호수가 1,008개로 많은 편이며 빙하 침식의 영향으로 산보다 평야가 많다. 수도는 코펜하겐이다.

기후는 멕시코 만 난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교적 날씨가 온화하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서늘하여 연교차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1년 내내 바람이 많으며, 특히 겨울에 기후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 네이버 검색(<http://www.naver.com> 2016. 7. 25. 인출)

[그림 1] 덴마크 지리적 특성

덴마크는 9세기경 독립국가를 이루어 13, 14세기에는 북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대국이었으나, 1523년 스웨덴이 독립하고, 1814년 나폴레옹전쟁에서의 패전으로 노르웨이까지 잃으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덴마크는 1849년 6월 절대왕정 폐지 및 의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유헌법이 제정되면서 입헌 군주제로 권력구조가 변하였고, 그 뒤 1901년 내각책임제가 채택되면서 입헌 군주제의 내각책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3권 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Folketing)가 공동 보유하고,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게 있어서 국왕은 상징적인 존재이다. 현 여왕은 1972년에 즉위한 H. M. Queen Margrethe II이다.

## 2. 인구학적 특성

덴마크 인구는 2015년 기준 총 5,699천명이다. 남자가 2,833천명, 여자가 2,866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다. 덴마크는 자연 증가와 이민정책으로 최근 몇 년 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로 이주해 온 이민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덴마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약 12.3%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Danmarks Statistik, 2016).

〈표 1〉 연도별 인구수

구분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5,505,995	5,532,531	5,557,709	5,579,204	5,599,665	5,623,501	5,655,750	5,699,220
남자	2,728,759	2,742,016	2,754,901	2,766,178	2,777,141	2,789,802	2,808,057	2,833,122
여자	2,777,236	2,790,515	2,802,808	2,813,026	2,822,524	2,833,699	2,847,693	2,866,098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2016년 1월 기준 평균 연령은 41.2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40.3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42.1세이다. 15세 미만의 총 아동 수는 2016년 1/4분기 기준

960274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6.8%에 해당한다. 또한 덴마크는 세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1980년 평균 36.7세보다 4살 정도가 많아졌고, 100세 이상 노인 인구도 1,058명으로 1980년 158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출산수준은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평균 1.71명이고, 출생아 수는 58,205명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 2,075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983년 1.83까지 떨어졌다.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여 최근에는 1.6~1.7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구분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생아 수	64,282	64,984	64,082	65,038	62,818	63,411	58,998	57,916	55,873	56,870	58,205	
남아	32,823	33,404	32,815	33,531	32,261	32,465	30,014	29,785	28,590	29,254	29,848	
여아	31,459	31,580	31,267	31,507	30,557	30,946	28,984	28,131	27,283	27,616	28,357	
합계출산율	1.8	1.85	1.84	1.89	1.84	1.87	1.75	1.73	1.67	1.69	1.71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자료: 〈표 2〉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2] 출산율 추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가들과 비교하면, 덴마크는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69명으로 28개 유럽연합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보다 높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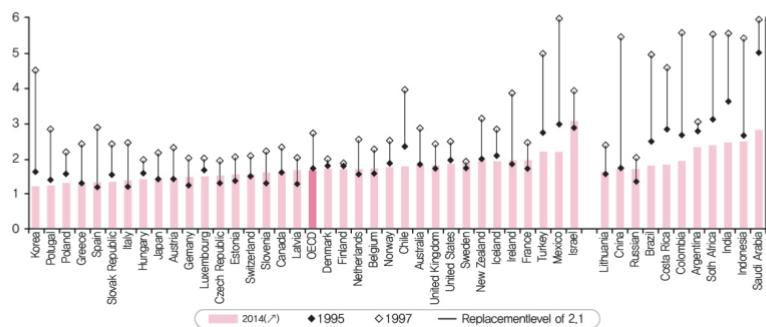
준이나, 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여서는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1.88명,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1.7명이 넘는다.

〈표 3〉 EU 합계출산율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명
EU(28개국)	1.51	1.54	1.56	1.61	1.61	1.62	1.59	1.59	1.55	1.58	
덴마크	1.80	1.85	1.84	1.89	1.84	1.87	1.75	1.73	1.67	1.69	
핀란드	1.80	1.84	1.83	1.85	1.86	1.87	1.83	1.80	1.75	1.71	
스웨덴	1.77	1.85	1.88	1.91	1.94	1.98	1.90	1.91	1.89	1.88	
노르웨이	1.84	1.90	1.90	1.96	1.98	1.95	1.88	1.85	1.78	1.75	
프랑스	1.94	2.00	1.98	2.01	2.00	2.03	2.01	2.01	1.99	2.01	
영국	1.76	1.82	1.86	1.91	1.89	1.92	1.91	1.92	1.83	1.81	

자료: 유럽연합통계(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2016. 7. 25. 인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덴마크는 출산율이 평균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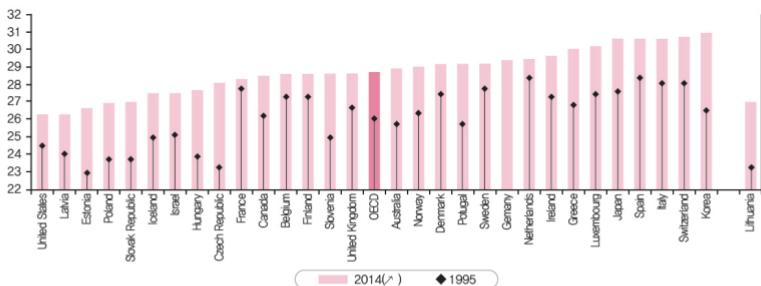


자료: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19991290.htm> 2016. 11. 21. 인출)

그림 3) OECD 국가별 합계출산율

한편, 덴마크 여성의 초산연령은 1995년 평균 27.4세에서 2014년 평균 29.2세로 지난 20년간 1.8세 증가하였다. OECD 국가가 1995년 평균 26.1세

에서 2014년 평균 28.7세로 2.6세 증가한데 반해 덴마크는 초산연령 증가 속도가 더디다. 2014년 기준 덴마크 여성의 초산연령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편이다.



자료: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19991290.htm>) 2016. 11. 21  
인출)

[그림 4] OECD 국가별 초산연령

덴마크 0~5세 미취학 영유아 수는 2016년 기준 359,697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0~5세 영유아 수는 출산율 하락에 따라 2008년 391,766명에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5세와 0세가 6만명 선으로 많고 나머지는 6만명 이하이다.

〈표 4〉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

구분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91,766	391,922	391,404	387,238	380,014	373,102	364,547	360,207	359,697	
0세	65,538	63,725	63,587	60,673	58,009	57,041	56,587	57,844	61,789	
1세	64,570	66,197	64,300	64,002	61,063	58,450	57,545	57,247	58,465	
2세	65,826	64,882	66,484	64,424	64,257	61,374	58,806	58,154	57,922	
3세	65,426	66,073	65,084	66,660	64,611	64,476	61,733	59,411	58,720	
4세	65,288	65,585	66,252	65,175	66,780	64,821	64,757	62,262	59,983	
5세	65,118	65,460	65,697	66,304	65,294	66,940	65,119	65,289	62,818	
인구전체	5,505,996	5,532,531	5,557,709	5,579,204	5,599,665	5,623,501	5,655,750	5,699,220	5,745,526	
비율	7.1	7.1	7.0	6.9	6.8	6.6	6.4	6.3	6.3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자료: 〈표 4〉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5] 연도 및 연령별 영유아 수

### 3. 경제적 특성

**덴마크의 2016년 경제성장률은 1.0%이다.** 2015년 국민총생산량은 1,985,347DDK로 2006년 1,682,713DDK보다 크게 성장하였다.

〈표 5〉는 북유럽 5개국의 경제성장률로,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다.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는 -8.3%, 스웨덴은 -5.2%, 영국 -4.3%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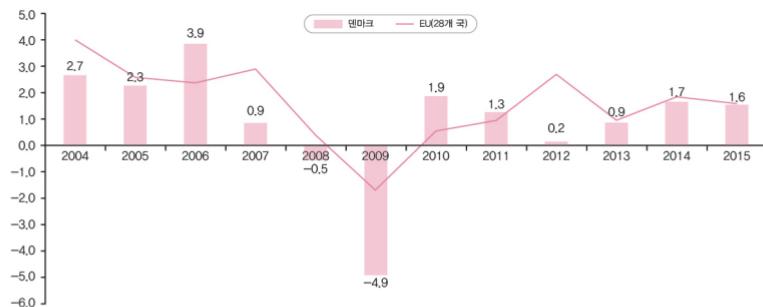
〈표 5〉 덴마크 경제성장률

구분	단위: 억 유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EU(28개국)	4.0	2.6	2.4	2.9	0.4	-1.6	0.6	1.0	2.7	1.0	1.9	1.6
덴마크	2.7	2.3	3.9	0.9	-0.5	-4.9	1.9	1.3	0.2	0.9	1.7	1.6
핀란드	3.9	2.8	4.1	5.2	0.7	-8.3	3.0	2.6	-1.4	-0.8	-0.7	0.2
스웨덴	4.3	2.8	4.7	3.4	-0.6	-5.2	6.0	2.7	-0.3	1.2	2.6	4.1
노르웨이	4.0	2.6	2.4	2.9	0.4	-1.6	0.6	1.0	2.7	1.0	1.9	1.6
프랑스	2.8	1.6	2.4	2.4	0.2	-2.9	2.0	2.1	0.2	0.6	0.6	1.3
영국	2.5	3.0	2.5	2.6	-0.6	-4.3	1.9	1.5	1.3	1.9	3.1	2.2

자료: 유럽연합통계(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pcode=tec00115&language=en> 2016. 7. 25. 인출)

덴마크도 예외는 아니었다. 2006년 3.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9년 -5.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1% 범위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자료: 〈표 5〉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6] 연도별 경제성장률

## 4. 교육제도

덴마크<sup>2)</sup>는 일찍이 1830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공립기초학교는 1년의 프리스쿨과 9년의 초등 및 중등교육, 그리고 1년 과정의 10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의 모든 교육은 의무이지만, 공립기초학교를 다니건 사립학교를 다니건 흠품스쿨링을 하건, 정해진 교육수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되고,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덴마크에서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이지, 취학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덴마크 교육체계는 크게 기초교육(초등 및 전기중등교육, Primary and Lower Secondary, 1-9/10학년), 후기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9/10-12학년), 고등교육(전문대학 2년, 종합대학 5년, 단과대학 3년 반 과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 “외교부(2016). 덴마크 개황자료”를 참고로 작성함.

## 가. 초등교육

덴마크 초등교육은 7세~16세까지 이다. 9년제 초급학교(Folkeskole,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결합)는 의무교육이며, 만 7세부터 16세까지가 해당된다. 덴마크에서는 10세부터 영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14세부터 제2외국어를 학습하도록 한다.

## 나. 중등교육

덴마크의 중등교육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일반 중등학교(Gymnasium)와 2~3년제 직업학교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진학한다. 직업학교의 경우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농업, 사회보건, 직업교육 연수 분야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바로 직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 밖에 고등상업기술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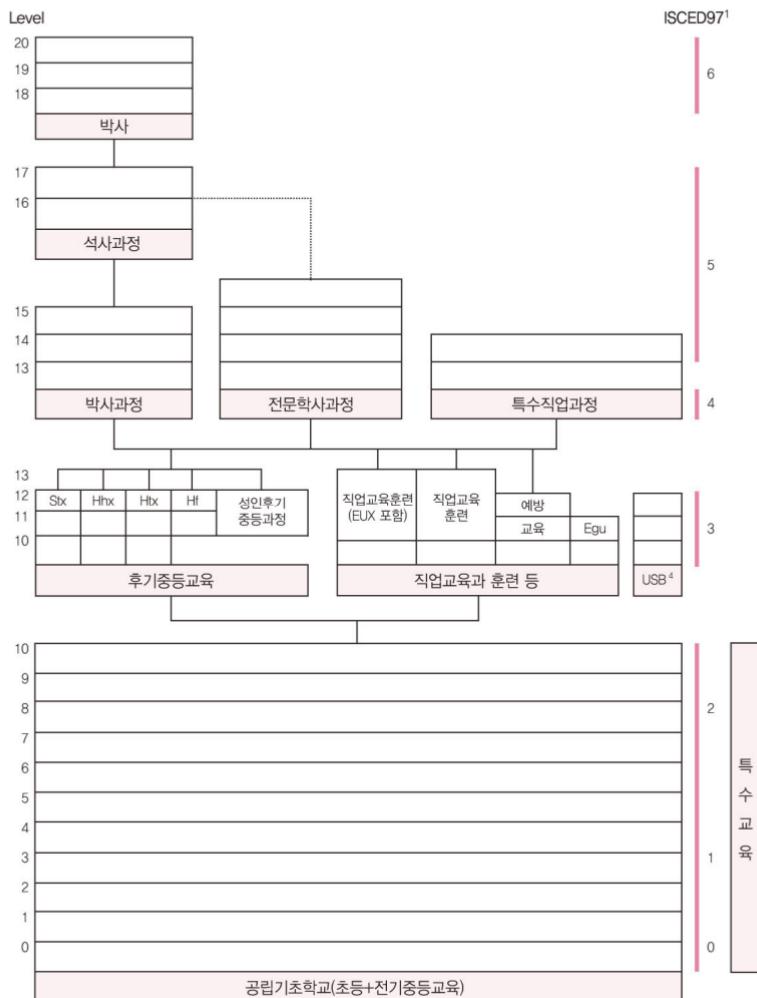
## 다. 고등교육

덴마크에는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이 있으며 대부분 학사과정(3년)이후 석사과정(2~3년)에 진학한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정부의 후원 아래 직장인이나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덴마크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표 6〉 덴마크 초중등학교 통계자료

구분	내용
총 공립학교 수	1,313개
총 학생 수	555,469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21.5명
교사 1인당 학생 비율	1:12.7
총 교사수	43,522명
이중언어 학생수	60,837명

자료: 외교부(2016). 덴마크 개황 자료



자료: 덴마크 교육부 <http://www.dk/Uddannelser/Paa-tvaers-af-uddannelsesarme/Overblik-over-det-danske-uddannelsessystem/Det-ordinære-uddannelsessystem> 2016. 7. 25. 인출)

[그림 7] 덴마크 교육체계

## 관련 법 및 제도

### 1. 관련법 및 제도

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육, 방과후 및 클럽 활동에 관한 법(Day-Care Facilities Act, Consolidation Act on Day-Care, After-School and Club Facilities, etc.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sup>3)</sup>

2007년 제정된 취학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육, 방과후 및 클럽활동 시설법(이하 ‘보육시설법’)은 아동·교육·성평등부(Ministry for Childre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가 관할한다. 이 법은 총 23장 111조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과 평가, 보조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 보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시설법 제1장은 이 법의 목적, 범위, 책임,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82051>(2016.7.20. 인출)

“윤성현(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덴마크- 한국법제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함.

---

이 법의 목적은 첫째, 보육과 방과후학교, 클럽활동 등의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와 발달, 학습을 증진시킨다. 둘째, 가족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과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필요와 희망에 따른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융통성과 선택지를 제공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통합적이고 일반적인 지원과, 특별한 지원을 요하는 아동 등에 대한 예방적이고 지원적인 활동들을 모두 교육적 조치로 필수화함으로써 박탈과 배제의 악순환을 막는다. 넷째,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시설 간의 연계와 연속성을 도모한다(동법 제1장 제1조).

이 법은 학습과 사회관계,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덴마크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이 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이 되며, 부모들은 동법에 따른 시설 중 아동 1명당 1개의 시설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2조).

이 법은 지방의회(local council)에게 책임이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 당국에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목적과 프레임워크를 계획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 기타 시설이 일관된 아동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당국에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개요와 민간보육과 아동을 직접 보육하는 경우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지방의회(local council)는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에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보육시설, 방과후학교, 클럽활동시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시설에 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의 시설 중 하나를 이용해서는 커버될 수 없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에 특별한 원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18세 이하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Act on Social Services)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4조).

지방의회는 이 법에 따른 시설들의 활동과 수행방식을 관리감독하여야 한

---

다. 지방의회는 관리감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제2장은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목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건강, 발달, 학습을 증진시키는 신체적, 정신적, 미학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와 협력하고, 개별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자존감을 지원하며, 아동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1,2항).

모든 보육시설은 0~2세 아동과 3세부터 취학연령까지의 아동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과정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놀이공간, 학습 발달을 제공해야 한다(동법 제 8조). 지방의회는 교육과정을 승인 권한이 있다(동법 제 10조). 보육시설에서 별도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식사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동법 제17조). 보육시설은 하나 이상의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에 의해 운영되나, 지방의회와의 협약이나 승인에 따라 민간업자들이 운영할 수도 있다(동법 제19조). 지방당국은 이동 부모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보조금은 최소한 75% 이상이고,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으로 책정된 총 운영비 중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sup>4)</sup>(동법 제31조). 지방의회는 사립 보육센터에도 아동 한 명당 운영보조금(operating subsidy)을 지급한다. 운영보조금은 인적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책정된 운영비용의 평균에 상응한다(동법 제 36조). 주거를 담당하는 지방당국은 건축보조금(building subsidy)을 사적 보육센터에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한편 별도로 추가적인 인적요소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하나의 보육시설 등에 2명 이상의 형제를 맡긴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원조 보조금이, 현저하게 또 영구적으로 감소한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가진 아이의 경우에는 개별적 원조 보조금이, 그리고 비용문제가 사회교육학적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교육학적 보조금이 지방의회에 의해 보조된다(동법 제43조).

---

4) 단 임대료를 포함한 재산비용은 제외함.

---

제3장은 방과후학교 센터에 대해 규정한다. 전반적인 구조는 제2장의 보육시설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보조금 비율에서 지방의회 분담분이 70% 이상이고 학부모 분담분이 30% 이하라는 점이 보육시설과 차이가 있다(동법 제57조).

제4장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클럽시설과 기타 방과후시설을 규정한다. 이 역시 전반적인 구조는 제2장, 제3장과 유사하며, 보조금 비율만 지방의회가 80%, 학부모가 20%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동법 제71조).

제5장은 사적인 보육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을 규율한다. 이 계획에 아동 2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에,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모가 재원을 마련하는 사적 보육계획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이 경우 이행조건들을 감독해야 한다(동법 제78조). 개인 집에서 보육이 이뤄질 때 5명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보육자가 2명 이상이면 10명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79조).

## 나. 공립학교법(Consolidation Act on the Folkeskole) 및 사립학교법(Consolidation Act on Private Schools etc.)<sup>5)</sup>

### 1) 공립학교법(Consolidation Act on the Folkeskole)

1953년에 제정된 덴마크 헌법(Danmarks Riges Grundlov) 제8장 제76조는 모든 의무교육 연령대 학생은 공립기초학교(Folkeskole)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동 조항은 취학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부모나 후견인은 그들의 자녀나 피후견인에게 통상의 초등교육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 반드시 공립학교(publicly provided school)에 취학시킬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이 곧 취학의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홈스쿨링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시행되고 있다.

---

5) <http://www.uvm.dk/publikationer/engelsksprogede/2003-the-folkeskole-consolidation-act> 2016. 7. 20 인출.

---

공립학교법(Consolidation Act on the Folkeskole)은 덴마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써 기초 학교의 목표와 구조, 교육내용, 학교조직, 교사, 의무 교육, 행정, 비용, 평가 등을 다루고 있다.

제1조는 공립기초학교는 부모와 협동하여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비함과 더불어 덴마크 문화 및 역사와 다른 나라와 문화에 친숙하게 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전인적 발전을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각각의 능력개발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시민교육도 포함된다. 이는 학교 교육이 국가에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제2조는 공립기초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기초의회가 공립기초학교의 기본적인 목표와 틀을 짜고, 개별학교는 그 틀 안에서 각자 교육을 책임지게 되며,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복지 시행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학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조는 기초의회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공립 기초교육을 기본적으로 담당하며, 또한 특수교육 내지 다른 방식의 교육적 지원들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교육적 원조는 아직 학령이 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해당된다. 광역의회(regional council, Regionsrået)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동법 제20조). 오랜 기간 전염병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건강 또는 복지 상의 문제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현재 체재하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동법 제23조). 또한 통학에 있어서도 학년별로 일정 거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의회가 운송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더 짧은 거리에 거주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이 문제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병들고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

지방의회가 운송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공공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사적 수단 이용시 비용 환급을 통해 이뤄진다(동법 제26조).

제5장은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무 교육은 공립 기초학교가 그 근간이 된다. 의무교육은 공립기초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참여할 의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말한다(동법 제33조 제1항). 덴마크의 의무교육은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나아가 최소 6개월 이상 체재하는 아동에게 적용된다(동법 제32조). 공립기초학교에 상응하는 다른 사립학교나 자유학교, 나아가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립기초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다(동법 제33조 제2항). 의무교육은 아동이 6세가 되는 해의 8월 1일에 시작하고, 9학년 과정이 끝나는 7월 31일에 끝난다(동법 제34조 제1항). 부모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교육 기간이 통상적으로 시작된 후에 1년을 유예하는 것을 지역의회가 허가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정당화될 때 그러하다(동법 제34조 제2항).

제8장은 공립기초학교에서의 비용에 관해 정하고 있다. 공립기초학교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나 광역자치체 등이 책임진다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한 특수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의 책임이다(동법 제49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공립기초학교의 비용을 기초 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하는 규칙제정권이 있다(동법 제49조 제2항). 단, 기초의회가 개인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정규시간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공립기초학교에서의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 지역문화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이다(동법 제50조 제1항).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는 택시미터 제도(taximeter system)에 기초해 이뤄지는데, 이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은 분야와 교육단계에 따라 다르다.

## 2) 사립학교법(Consolidation Act on Private Schools etc.)

덴마크는 복지국가 이념에 기초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공교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사립학교, 자유학교, 험스쿨링까지 법제화하고 있다.

사립학교·자유학교법 제1장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총론으로 규정한다. 먼저 자유학교·사립학교는 동법의 규율 내에서 학교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공립기초학교에서 제공되는 것에 상응해야 하고, 이는 언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중언어 아동에게도 동일하다. 학교는 덴마크 사회에서 학생들이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존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동법 제1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취할 것에 대해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학생의 요구와 능력에 상응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동법 제1b조). 사립학교에서의 교육 언어도 덴마크어이다. 그러나 독일계 소수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경우 덴마크어 이외의 언어를 승인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사립학교에서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원조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일시적으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오랫동안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는 특별한 사립학교·자유학교법 제1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자유학교·사립학교는 동법의 규율 내에서 학교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은 공립기초학교에서 제공되는 것에 상응해야 하고, 이는 언어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중언어 아동에게도 동일하다.

제4장은 국가 보조금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반 운영비 보조는 매해 재학생 수에 따라 지급된다. 여기서는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 수는 배제되나, 교육부장관은 덴마크와 특별한 연관이 있거나 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목적 하에 덴마크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무시하고 산입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 2. 행정 및 전달체계

덴마크의 행정구역은 5개 지역(region)과 98개 지방자치체(Kommune)로 이루어져 있다. 5개 지역은 2007년 1월 1일 기준의 13개 주(amt)를 대체하여 만들어졌다. 동시에 지방자치체(Kommune)도 270개에서 98개로 통합되었다<sup>6)</sup>.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이나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Region)를 대표하는 주지사(Regionsrådsformand)는 주 의회에 의해 선출되어 해당 주의 행정 전반을 소관하며, 주의 주요 사업분야는 보건, 사회·특수교육기관 운영과 지역개발이 포함된다. 각 주는 직접 세금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지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주 경제는 크게 보건, 복지서비스 및 특수교육, 지역개발 세 분야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나뉘어 개별 운영된다.

〈표 7〉 중앙 및 지방정부간 담당 업무

국가	광역단체(5단체)	기초단체(98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경찰, 국방, 사법, 외교</li><li>보건 및 의료정책</li><li>교육(의무교육 제외)</li><li>실업보험</li><li>과제, 징세</li><li>도로, 철도</li><li>자연보호, 환경정책</li><li>문화진흥</li><li>산업정책, 연구개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병원서비스</li><li>지역개발·산업정책 등</li><li>토양오염방지</li><li>특정복지서비스</li><li>특정교육</li><li>공공고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아동, 노인, 가정복지(방문간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 등)</li><li>연금사무</li><li>의무교육, 사회교육</li><li>징세업무</li><li>방재, 지방도로</li><li>자연보호, 환경대책</li><li>도서관, 문화, 스포츠</li></ul>

자료 조기현(2013). 외국의 지방재정제도-덴마크와 스웨덴의 협평화보조금. 한국법제연구원. p.217.

6) 코펜하겐(København, 코펜하겐, 자치체), 프레데릭스베르(Fredrik'sberg, 자치체), 보른홀름(Bornholms Regionskommune, 자치체) 3개의 자치체와 코펜하겐 주(Københavns Amt), 프레데릭스보르 주(Fredrik'sborg Amt), 로스킬레 주(Roskilde Amt), 베스트셀란 주(Vestsjællands Amt), 스토르스트룀 주(Storstrøms Amt), 펈스 주(Fyns Amt), 쇠네르윌란 주(Sønderjyllands Amt), 리베 주(Ribe Amt), 비일레 주(Vejle Amt), 링코빙 주(Ringkjøbing Amt), 비보르 주(Mborg Amt), 노르윌란 주(Nordjyllands Amt), 오르후스 주(Aarhus Amt) 13개 주가 있음.

---

덴마크의 보육·유아교육은 사회부 관할 하에 있었으나, 2011년 국회선거 후 12월에 아동교육부(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로 이관되었다. 학교 내 설치된 방과후 센터 역시 일반교육 법과 학교법에 근거하며, 아동교육부가 관장한다. 행정은 지방정부 책임 하에 있으며, 생후 26주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 보장의 의무가 있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 민간·가정보육서비스 관리감독, 보조금 지급 등을 담당한다.

# 덴마크 보육·유아 교육 현황

## 1. 서비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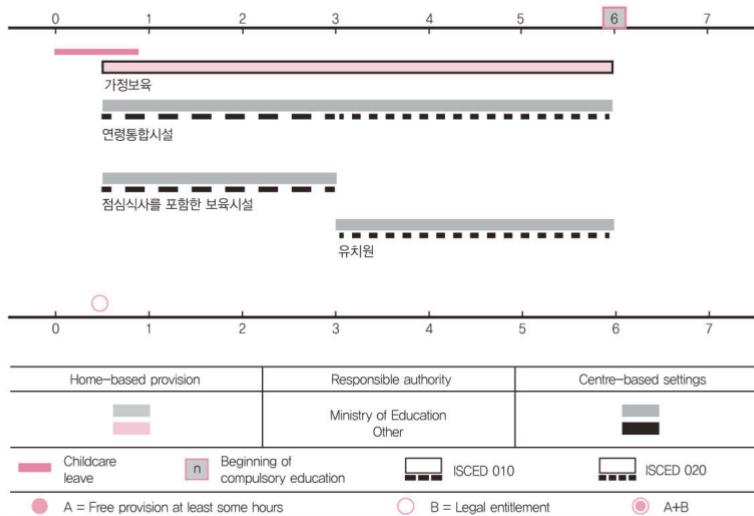
**덴**마크의 보육시설은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며, 좋은 환경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는 유아원 (crèche), 유치원(Kindergartens),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등이 있다. 이 외에 6~12세 아동을 위한 시설로 방과후 센터(After-school centre), 레크레이션 센터(Recreation centres),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clubs) 등이 있다.

〈표 8〉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유형

구분	대상 연령	운영시간	관리감독
유아원 (Crèches, Nurseries)	6개월~3세	1일 10시간 주 5일	교육부 지방정부
유치원 (Kindergartens)	3~6세	1일 10시간 주 5일	"
연령통합기관 (Age-integrated institutions)	생후26주~6세	1일 10시간 주 5일	"
가정보육 (Child-minding)	생후26주~3세	1일 9시간	"
유치원 학급(Kindergarten class, Pre-primary school)	6세	1일 3~6시간	교육부

자료: Oberhuemer, et al (2010). Professio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 European profiles and perspectives. 일부 발췌



자료: EACEA(201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 in Europe National Information Sheets 2014/15.

#### 〔그림 8〕 덴마크 보육·유아교육(보육·유아교육) 개요

유아원(Crèches)은 생후 6개월에서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Kindergartens)은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은 보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유아원과 유치원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

덴마크의 모든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는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보통 오전 6시 30분 또는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연중무휴 주 5일 제로 운영된다. 이 외에 간호사 등 교대근무자들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기관이 소수 있다.

보육모가 자기 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Child-minding)은 하루 9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가정보육(Child-minding)은 3~5세 유아를 돌보기도 한다.

이 외에 유치원 학급(Kindergarten class), 즉 초등 예비학급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일 3~6시간 운영되었으나, 2009년 8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전환되었다.

## 2. 설치 및 운영 주체

덴마크의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Daginstitutioner)과 가정보육(Dagpleje)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보육시설(Daginstitutioner)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공립, 독립, 위탁 또는 민간 보육시설로 구분되며,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되고 위탁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보육시설 공급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가정보육(Dagpleje)도 공립 또는 민간으로 구분된다. 민간 가정보육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며,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적정 공급량을 결정한다.

### 가. 공립 보육시설(Kommunale daginstitutioner)

공립 보육시설들은 공공기관 소유의 기관으로 유아원(Crèches), 유치원(Kindergartens),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 등이 있다. 주로 0세에서 취학 전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 **나. 독립운영 보육시설(Selvejende daginstitutioner)**

독립운영 보육시설은 지역의회와의 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보육시설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운영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 **다. 위탁 보육시설(Udliciterede daginstitutioner)**

위탁 보육시설은 민간 공급자가 지역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보육시설 수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 보육시설 수는 지방정부가 정한다. 민간 공급자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 **라. 민간 보육시설(Privat institutioner)**

민간보육시설은 지역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 소유자는 독립적으로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 **마. 공립 가정보육(Kommunal dagpleje)**

공립 가정보육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보육모 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형태이다. 보육모 수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며, 보육모 1명 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은 1일 최대 5명이며, 아동을 추가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아동 10명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 **바. 민간 가정보육(Privat dagpleje)**

민간 가정보육은 보육모와 지방정부 간의 운영 협약에 근거한다. 지방정부가 민간 보육모 수를 결정하며, 보육모 1인당 최대 5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아동을 추가로 돌봐야 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가정보육사 1명당 1일 최대 10명까지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레크레이션센터, 청소년클럽, 방과후과정 등 운영되고 있다.

### 3. 공급과 이용

2014년 기준 유아원은 225개소, 유치원 1,174개소, 연령통합기관 2,394개소로 추정된다. 덴마크는 공립 비율이 높다. 유아원의 경우, 공립이 124개소, 민간 44개소, 독립운영 57개소로 공립이 55.1%를 차지한다.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이 737개소로 전체의 62.8%를 차지한다. 나머지 중 민간 204개소, 독립운영 233개소이다. 연령통합기관의 경우, 공립이 1,784개소 74.5%로 가장 높다.

〈표 9〉 보육·유아교육 제공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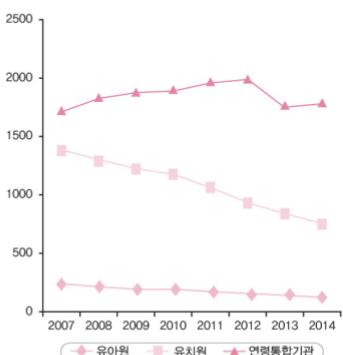
구분	단위: 개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strong>전체</strong>								
유아원	361	325	311	305	287	259	241	225
유치원	2,084	1,899	1,794	1,750	1,613	1,422	1,285	1,174
연령통합기관	2,205	2,372	2,429	2,460	2,573	2,556	2,380	2,394
<strong>공립</strong>								
유아원	224	203	193	182	169	147	134	124
유치원	1,371	1,287	1,206	1,169	1,052	922	815	737
연령통합기관	1,719	1,834	1,885	1,905	1,969	1,974	1,772	1,784
<strong>민간</strong>								
유아원	28	24	25	33	37	42	44	44
유치원	113	104	116	139	169	191	204	204
연령통합기관	102	124	139	151	172	209	238	264
<strong>독립 운영</strong>								
유아원	109	98	93	90	81	70	63	57
유치원	600	508	472	442	392	309	266	233
연령통합기관	384	414	405	404	432	373	370	346

주: 보육서비스(daycare)는 data missing 또는 부정확성 등으로 집계되지 않음.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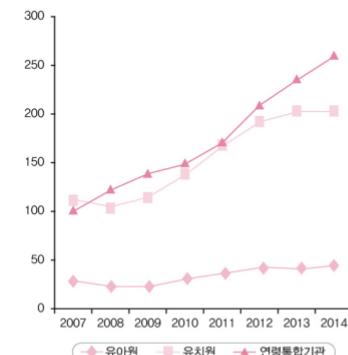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인 코펜하겐의 경우, 유아원과 혼합연령기관은 공립 비율이 높지만, 유치원은 지역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가 운영하는 독립운영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립 시설의 경우,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운영 형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육시설 공급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다. 유아원과 유치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연령통합기관은 2007년 2,205개소에서 2011년 2,500여 개소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표 9〉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9] 공립 제공기관 수



자료: 〈표 9〉를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10] 민간 제공기관 수

보육서비스 등록 아동 수는 2014년 기준 총 288,332명이다. 2007년 30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등록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대다수가 연령통합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유치원, 유아원 순이고, 보육 서비스도 유치원 수준이다.

〈표 10〉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05,416	308,420	306,576	309,732	308,292	303,535	297,509	288,332
보육서비스	66,007	63,562	62,394	60,058	56,032	51,357	46,758	41,084
유아원	13,339	12,241	11,988	11,756	11,171	10,238	9,600	8,692
유치원	96,550	89,179	82,446	80,933	75,697	66,182	59,341	53,242
연령통합기관	129,520	143,438	149,748	156,985	165,392	175,758	181,810	185,314
공립								
전체	247,449	252,468	251,325	253,216	251,739	247,362	240,987	232,072
보육서비스	65,844	63,336	62,160	59,850	55,944	51,275	46,590	40,982
유아원	8,895	8,090	7,992	7,765	7,344	6,663	6,247	5,675
유치원	68,317	65,071	59,635	58,349	54,067	47,416	41,929	36,923
연령통합기관	104,393	115,971	121,538	127,252	134,384	142,008	146,221	148,492
민간								
전체	6,451	6,822	7,454	9,398	11,534	14,206	16,411	18,125
보육서비스	163	226	234	195	94	82	167	102
유아원	441	432	375	549	642	724	759	769
유치원	2,718	2,495	2,853	3,733	4,675	5,455	5,938	6,018
연령통합기관	3,129	3,669	3,992	4,921	6,123	7,945	9,547	11,236
독립운영								
전체	51,516	49,130	47,797	47,105	45,025	41,967	40,110	38,135
보육서비스	-	-	-	-	-	-	-	-
유아원	4,003	3,719	3,621	3,442	3,185	2,851	2,594	2,248
유치원	25,515	21,613	19,958	18,851	16,955	13,311	11,474	10,301
연령통합기관	21,998	23,798	24,218	24,812	24,885	25,805	26,042	25,586

자료: 덴마크 통계청(De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서비스 주체별로 보면, 먼저 공립은 2007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연령통합기관 이용 아동수는 매년 증가하나 유아원과 유치원, 보육서비스 등록 아동수 감소가 전체 이용 아동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간 부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4년은 2만여 개소에 달해 2007년과 비교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서비스 별로는 연령통합기관의 증가는 전체 증가율을 뛰어 넘는다. 독립운영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공립과 마찬가지로 연령통합기관은 증가하는 데 반해, 유아원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다.

덴마크 0~5세 아동수 대비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2014년 기준 3~5세가 98%로 대부분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세는 89.6%로 높은 편이며, 0세는 17.7% 정도이다. 3~5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1~2세는 90% 선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90% 미만으로 떨어졌다. 0세도 1~2세와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11〉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
0세	17.8	19.1	18.7	19.1	17.7	
1~2세	91.3	91.0	90.9	91.1	89.6	
3~5세	97.4	97.4	97.9	97.4	98.0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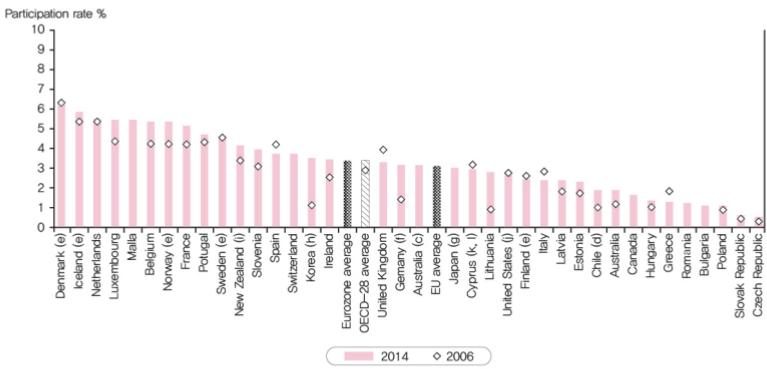
덴마크와 함께 북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과 비교하였다. 0~2세 이용률은 덴마크가 2014년 기준 65.2%로 OECD 평균 38.1%의 두배 가까이 된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3~5세 이용률도 덴마크가 95.5%로 OECD 평균 83.8%보다 높다. 핀란드를 제외한 노르딕 국가 대부분 95% 내외 수준이다.

〈표 12〉 보육서비스 이용률 북유럽 5개국 비교

구분	0~2세			3~5세				단위: %, 시간	
	전체	주당	평균 이용시간	종일 보육	전체	3세	4세	5세	
덴마크	65.2	35.8	77.7	77.7	95.5	90.9	97.2	98.4	
아이슬란드	59.7	37.9	75.4	75.4	96.1	96.0	96.8	95.6	
노르웨이	54.7	33.5	61.0	61.0	96.6	95.3	97.0	97.5	
스웨덴	46.9	30.8	48.2	48.2	94.3	93.2	94.6	95.1	
핀란드	27.9	31.5	29.3	29.3	73.8	68.2	73.9	79.4	
OECD평균	38.1	29.8	38.1	38.1	83.8	69.9	86.4	95.0	

주: 0~2세, 3~5세 자료는 2014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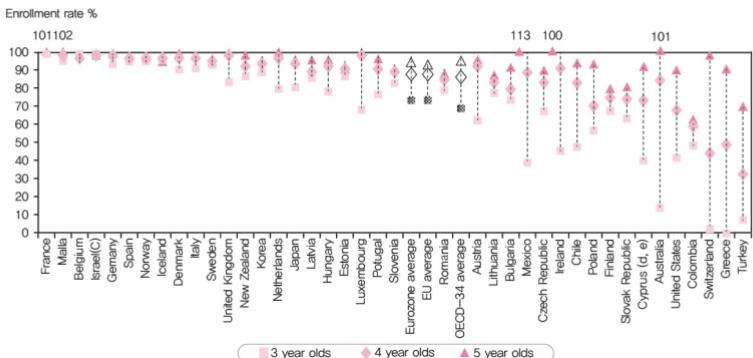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1 인출)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1. 인출)

[그림 11] 0~2세 공식 보육 및 유아교육 이용률

덴마크 아동 중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4세가 21.8%, 3세 20.8%, 2세 18.8%, 5세 17.7%, 1세 17.4% 순이며, 0세가 3.5%로 소수이다. 0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30%를 상회하는 한국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2. 30. 인출)

[그림 12] 3-5세 유아교육 또는 취학전 교육 참여율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2014년 기준 총 288,332명으로, 연령별로는 4세 21.8%, 3세 20.8%, 2세 18.8%, 5세와 1세 각각 17.7%, 17.4%, 0세 3.5% 순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총 41,084명으로 0~5세 중 1세가 19,118명, 2세 16,848명, 0세 4,542명이며, 3세 이상은 200명 내외 수준이다. 유아원은 공립과 독립운영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며, 1, 2, 0세 순으로 많다. 유치원도 공립과 독립운영 기관 이용 아동수가 대부분으로 4, 3, 5세 순으로 이용 아동수가 많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통합기관은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3,4세가 가장 많고, 0세가 가장 적다.

〈표 13〉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수: 2014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단위: 명
전체 (비율)	10,018 (3.5)	50,160 (17.4)	54,138 (18.8)	59,927 (20.8)	62,957 (21.8)	51,132 (17.7)	288,332 (100.0)	
보육서비스								
전체	4,559	19,162	16,889	244	119	111	41,084	
공립	4,542	19,118	16,848	244	119	111	40,982	
민간	17	44	41	-	-	-	102	
독립운영	-	-	-	-	-	-	-	
유아원								
전체	787	4,172	3,511	171	48	3	8,692	
공립	515	2,731	2,231	148	47	3	5,675	
민간	66	340	341	21	1	-	769	
독립운영	206	1,101	939	2	-	-	2,248	
유치원								
전체	6	29	2,362	16,744	18,530	15,571	53,242	
공립	5	21	1,657	11,673	12,888	10,679	36,923	
민간	1	5	254	1,847	2,041	1,870	6,018	
독립운영	-	3	451	3,224	3,601	3,022	10,301	
연령통합기관								
전체	4,666	26,797	31,376	42,768	44,260	35,447	185,314	
공립	3,703	21,540	25,045	34,259	35,606	28,339	148,492	
민간	313	1,477	1,893	2,600	2,711	2,242	11,236	
독립운영	650	3,780	4,438	5,909	5,943	4,866	25,586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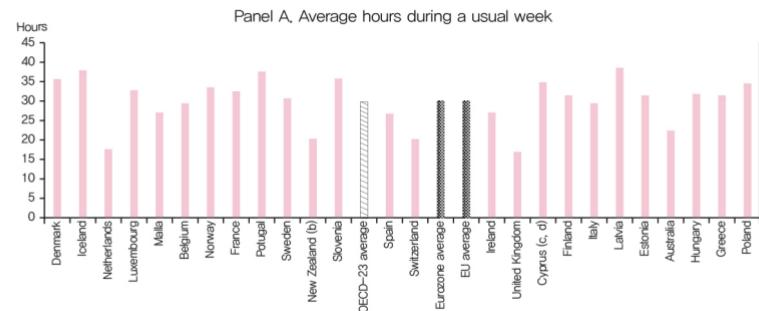
## 4.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0~2세 정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시간은 덴마크가 주당 평균 35.8 시간으로 OECD 평균 29.8시간보다 6시간 길다.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이슬란드 평균 37.9시간보다는 짧지만 노르웨이 등의 국가보다는 긴 편이다.

〈표 14〉 0~2세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2014년

구분	주당 평균 이용시간
덴마크	35.8
아이슬란드	37.9
노르웨이	33.5
스웨덴	30.8
핀란드	31.5
OECD평균	29.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1. 인출).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1. 인출).

〈그림 13〉 0~2세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3세 이하 아동 중 공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비율은 2014년 기준 30.0%이다. 2010년에 23%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27개국의 보육서비스 미이용률은 평균 72%이고, 북유럽 국가들도 40~60%대로 덴마크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표 15〉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별 이용률: 3세 이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
주당 1~29시간									
유럽 27개국 평균	15.0	15.0	14.0	14.0	14.0	14.0	13.0	14.0	
덴마크	7.0	8.0	10.0	10.0	5.0	8.0	2.0	6.0	
아이슬란드	5.0	4.0	4.0	3.0	4.0	3.0	3.0	1.0	
노르웨이	7.0	10.0	8.0	10.0	7.0	10.0	10.0	11.0	
스웨덴	20.0	18.0	26.0	18.0	19.0	17.0	21.0	19.0	
핀란드	6.0	5.0	6.0	8.0	6.0	7.0	7.0	11.0	
주당 30시간 이상									
유럽 27개국 평균	1.0	13.0	13.0	14.0	15.0	13.0	14.0	14.0	
덴마크	63.0	65.0	63.0	68.0	69.0	59.0	63.0	64.0	
아이슬란드	36.0	36.0	38.0	37.0	35.0	39.0	40.0	42.0	
노르웨이	25.0	27.0	34.0	37.0	35.0	33.0	37.0	44.0	
스웨덴	27.0	31.0	37.0	33.0	32.0	35.0	34.0	37.0	
핀란드	20.0	21.0	21.0	20.0	20.0	22.0	21.0	23.0	
공식보육 미이용									
유럽 27개국 평균	75.0	72.0	73.0	72.0	71.0	72.0	72.0	72.0	
덴마크	30.0	27.0	27.0	23.0	26.0	33.0	35.0	30.0	
아이슬란드	59.0	60.0	59.0	60.0	61.0	59.0	56.0	57.0	
노르웨이	68.0	63.0	59.0	52.0	58.0	57.0	54.0	45.0	
스웨덴	53.0	51.0	37.0	49.0	49.0	47.0	45.0	43.0	
핀란드	74.0	74.0	73.0	72.0	74.0	71.0	71.0	67.0	

자료: 유럽연합통계(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 2016. 7. 25. 인출).

한편, 보육서비스 및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주당 1~29시간과 3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덴마크 아동 중 주당 1~29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2014년 기준 6.0%이다. 2007년 7%에서 2009년 10%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유럽 27개국 평균 14%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주당 30시간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덴마크 아동은 2014년 기준 64%로, 유럽 27개국 14%보다 월등히 높아서 덴마크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5. 입소 절차

### 가. 서비스 신청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생후 27주에서 취학 전 연령까지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신청기한은 각 지방의회가 정하며, 부모들은 생후 26주 이전에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부모가 지방정부가 정한 신청기한 내에 보육서비스를 신청하고, 자녀가 26주가 된 시점에 바로 보육시설 이용을 원하면 지방의회는 자녀가 26주가 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보육시설에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는 법으로 특정 보육시설에 입소할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부모가 특정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면, 보육시설법 23조에 따라 지역의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사립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보육시설 희망 입소시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설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 부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녀의 보육시설 입소시기를 늦추더라도 보육서비스 이용자격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생후 26주가 되는 시점부터 4주 이내에 보육시설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는 지역정부가 아동보장제도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민간 보육서비스 비용을 부모에게 지급하거나, 관할 지역 이외의 시설 이용비용을 지불하거나 기타 보육서비스를 보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보장법 24조에 따른다.

### 나. 보육시설 입소

보육시설 입소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하는 권한은 각 지방 정부에 있다. 각 지방정부는 반드시 관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입소자

---

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육시설 각 지방정부는 입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제 동반 여부, 함께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아동 유무, 시설 입지, 특별한 관심 필요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지역의회는 독립운영 보육시설, 위탁 및 사립 보육 시설에 보육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에 아동을 배치할 때에 부모의 희망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부모의 권리라고 인식한다. 이는 부모가 타 기관으로 이동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다. 타 지역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 시에도 이전 지역에서 부여받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자격을 그대로 이전받는다.

행정구역 경계 부근에 거주하여 부모가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우, 보육시설법에 따라 이들 자녀는 타 지역의 보육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타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아동은 해당 지역의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다. 부모가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아동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받는다.

타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은 거주 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해당 지방정부의 비용과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총 예산을 기준으로 당 해년도 지역 내 해당 연령이 이용하는 평균 보육시설 이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보조금을 결정한다. 가령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시설의 총 운영비가 거주지 내의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비용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부모가 지불하여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부 지역 아동의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 보육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거나, 관할 지역

---

내 아동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의회는 한 번에 최대 세 달까지 대기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의회는 반드시 이를 인터넷(ventelistelukning.dk)에 고지하여야 한다.

## 6. 보육 · 유아교육과정

**덴마크**는 2004년 9월 1일부터 보육시설에서 0~2세 아동을 위한 보육 과정과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의 보육교육과정은 아동에게 놀이 및 관찰, 탐구,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으로 계획된 활동을 통해 학습과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즉, 보육시설에서 아동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등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아동이 독립심과 사회적 연대 및 결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 덴마크 사회로의 통합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보육 · 교육과정과 관련한 사항은 보육시설 법(Consolidation Act on Day-Care, After-School and Club Facilities, etc.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Day-Care Facilities Act)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보육시설은 0~2세와 3세~취학전 아동을 위한 보육 · 교육과정(Pedagogical curriculum)을 계획하고, 아동의 발달과 학습, 놀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아동 개개인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다음 6개 주제 내에서 아동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육 ·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 총체적인 인성 발달(Comprehensive personal development),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ies), 언어발달 (Language development), 신체와 동작(Body and motion), 자연과 자연현상 (Nature and natural phenomena),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표현(Cultural values and artistic expressions)이다.

---

보육·교육과정은 목표 달성과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에도 교육학적 접근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 활동, 목표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을 돋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아동의 환경은 아동 중심으로 평가되고,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보육을 위한 보육·교육과정은 지방정부의 가정보육 계획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공표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2년에 한번 보육·교육과정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는 보육시설이 제출한 보육·교육과정을 승인하고, 보육시설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2007년 8월부터 보육시설에 등록된 3세 아동에게 언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언어평가를 통해 언어적 자극(또는 치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반드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7. 보육 유아교육 인력

### 가. 자격기준

덴마크 보육시설 교사(pedagogue 또는 educator)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높은 학력을 소지한다. 전체 종사자의 60%가 학사학위 소지자로, 이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보조교사(educator assistant)는 학사학위 소지자 교사 를 지원한다.

덴마크에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인은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사(educator)는 최소한 3.5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ISCED level 5B)이어야 하는 반면, 보조교사에 대한 최소 자격기준은 없으며 경력과 적성으로 평가한다.

일부 보조교사의 경우는 최소한 18개월의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사(child minders)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은 없으나 최소 3주간의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표 16〉 덴마크의 보육시설 인력 유형, 양성교육 및 자격기준

구분	서비스유형	명칭	양성교육	자격기준
0-2세	기정보육 (Childminding)	가정보육사 (child minder)	3주	적성 및 이전 경력
	유아원 (Crèches, Nurseries)	교사 (pedagogue)	최소 3.5년제 대학졸	학사학위 졸 사회교육 전공
	연령통합기관 (Age-integrated institutions)	교사보조 (pedagogue assistant)	훈련기간 없음. 직업교육 수준	중등학교 직업교육 (교사보조 자격의)
3-5세 유아	유치원 (Kindergartens)	교사 (pedagogue)	최소 3.5년제 대학졸	학사학위 (취학전 교육 전공)
	연령통합기관 (Age-integrated institutions)	교사 (pedagogue)	최소 3.5년제 대학졸	학사학위 (취학전 교육 전공)

자료: Danish Ministry for Children and Education(2012). Fakta om dagtilbud.

## 나. 종사자 현황

덴마크 보육서비스, 유아원, 유치원, 연령통합기관의 종사자 수는 2014년 기준 69,418명이다. 종사자 수는 2009년 7만 8천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17〉 보육시설 종사자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단위 명
전체	74,076	77,330	78,153	76,883	74,520	72,731	71,520	69,418	
보육서비스	20,308	19,934	19,534	18,458	17,310	15,587	14,157	12,811	
유아원	5,784	4,663	4,724	4,392	4,008	3,727	3,435	2,874	
유치원	19,290	18,527	17,491	15,959	14,477	13,368	12,206	10,261	
연령통합기관	28,694	34,206	36,404	38,074	38,725	40,049	41,722	43,472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서비스 유형별로는 연령통합기관이 43,472명, 보육서비스 12,811명, 유치원 10,261명, 유아원 2,874명 순이다. 보육서비스, 유아원, 유치원 등의 종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통합기관 종사자는 이용 이동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를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서비스(day care) 종사자 중 교사(pedagogical work)는 11,826명과 587명, 관리자 209명, 사무직 113명이다. 청소 및 주방, 건강관리, 보육 업무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추가로 있다. 유아원도 교사가 1,126명과 1372명, 유치원도 3,427명, 4,897명, 연령통합기관 15,847명 21,814명으로 많다. 연령통합기관과 유치원은 청소 및 주방, 보육업무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이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많다.

〈표 18〉 직종별 종사자 수: 2014

구분	보육서비스	유아원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단위 명
관리자	209	185	1,018	2,950	
사무직	113	2	56	283	
의사 또는 간호사	1	-	-	-	
교사 등	8	-	28	93	
사회복지사 등	-	-	-	-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	-	10	18	
pedagogical work etc	587	1,372	4,897	21,814	
pedagogical work etc	11,826	1,126	3,427	15,847	
사회 및 건강관리 보조	5	-	14	8	
취사부	2	56	40	729	
청소 및 주방 보조	43	118	669	1,371	
보모	17	14	101	359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 다. 근무시간

교사와 보조교사는 보통 주당 37시간, 가정보육사는 주당 약 48시간을 근무한다. 모든 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사는 유급휴가, 병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라.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 비율 또는 아동을 돌보는 성인의 소지자격에 대한 국가수준의 규정은 없다. 시설 중심의 보육시설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가정보육은 일반적으로 1:5를 기준으로 한다.

〈표 19〉 교사 대 아동비율 북유럽 5개국 비교

구분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Pre-primary education
OECD 평균	14.4	13.6
덴마크	-	-
아이슬란드	3.5	5.6
노르웨이	-	11.4
스웨덴	5.3	6.4
핀란드	-	10.3

자료: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 8. 보육·유아교육 질 관리

**덴**마크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감독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대부분 단일한 행정체계로 취학 전 서비스, 초등학교 서비스 및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다. 지방정부 행정기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 상담가(education consultant)를 임용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기관장과 긴밀하게 함께 일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위원회는 모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질 관리의 핵심적 요소로 강조된다(문무경, 2013).

### 가. 질 관리 중점내용

2004년도 이후부터 모든 유형의 보육서비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의

---

무화되어 왔다. 모든 기관이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할 언어발달, 인성발달, 사회성 발달 등의 필수주제가 주어지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접근 및 운영방식은 단위기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언어적 자극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2007년부터 3세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3세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언어평가 결과, 아동이 언어적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언어자극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가정보육(child minding) 질 관리

공립 가정보육사는 지방정부와 계약하며, 지방정부가 선발, 훈련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관리감독한다. 부모가 직접 계약하는 민간 가정보육사는 지방정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방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시장부와 협약을 맺는 경우 공립 가정보육사와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되며 관리감독을 받는다.

# 덴마크 보육·교육 비용 지원

## 1. 지원 개요

지방정부는 보육서비스 보조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 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결정할 수 있고, 부모가 보육서비스 보조받는 대신 생후 24주 이상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가 지원 유무를 결정하는데, 지방의회가 보육서비스 보조를 결정하면 지원 대상아동 연령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 가. 보육서비스 지원조건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육시설법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부모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보육시설에 자녀를 등록할 수 없고, 동법 제80조에 따라 개인 보육서비스 보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자녀 직접 양육 보조금의 신청자격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고, 부모가 수입이 없으며, 덴마크에서 최소 7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 나. 가구당 보조금 규모와 지원기간

보조금은 최소 8주에서 1년까지 지급한다. 지방정부에 따라 이보다 최소 및 최대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가구당 세 번이다. 지방정부는 지원기간에 따라 각 아동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동 1인당 총 지원기간은 정해진 지원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아동 1인당 1개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다. 보조금 규모

한 가구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정해진 혜택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보조금은 연령별로 아동 1인당 금액이 고정된다.

덴마크 코펜하겐 시의 민간 가정보육 이용 시 보조금 지원단가와 부모부담금을 살펴보았다. 코펜하겐 시는 보육료의 75%를 부담한다. 아동 연령 및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표 20〉에 제시하였다.

〈표 20〉 아동 1인당 가정보육 최대 보조금: 코펜하겐 2016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주당 20시간 이하		주당 20~29시간		주당 30시간 이상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최대 지원금	3,461	2,106	5,191	3,160	6,402	3,897
부모 부담금	1,154	702	1,730	1,053	2,134	1,299
기정보육사 월 수입	4,615	2,808	6,921	4,213	8,536	5,196

주: 1DDK=165K(2016년 말 기준).

자료: Children and Youth Committee Municipality of Copenhagen(2016). Private childcare Pedagogical supervision and financial contribution.

쌍둥이 등 형제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형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50%이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다른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높은 보육서비스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보육서비스 비용은 절반 가격만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표 21〉는 코펜하겐 시 형제할인 지원금 단가이다.

〈표 21〉 아동 1인당 가정보육 형제 보조금: 코펜하겐 2016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주당 20시간 이하		주당 20~29시간		주당 30시간 이상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3세 미만	1,677	838.50	2,516	1,258	3,354	1,677
3세 이상	1,276	648	1,913	956.50	2,551	1,275.50

주: 1DKK=165KRW(2016년 말 기준).

자료: Children and Youth Committee Municipality of Copenhagen(2016). Private childcare Pedagogical supervision and financial contribution.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특별보조금 제도도 운영하는데, 총 가구소득이 DKK 166,400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고, DKK 166,401~516,799는 부분 면제, DKK 516,800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지원 현황

민간보육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아동은 2015년 기준 8,702명, 가정보육은 847명이다.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기준 민간보육서비스는 8,281명, 가정보육은 693명으로 민간보육서비스와 가정보육 모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표 22〉 보육서비스 유형별 수급자 수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동								
민간보육서비스	4,116	4,963	5,227	6,378	6,881	7,063	7,765	8,702
가정보육	755	859	868	811	877	1,270	1,303	847
가족								
민간보육서비스	3,899	4,451	4,814	5,944	6,397	6,694	7,420	8,281
가정보육	611	682	738	680	795	1,130	1,164	693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 2. 보육료

**보** 육료는 아동의 연령 및 보육·유아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16년 기준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는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0~2세가 DKK 29,831(KW 4,922,115)이고, 3~5세가 DKK 23,980(KW 3,956,700)으로 영아가 유아보다 보육료가 많다. 유아원은 DKK 34,535(KW 5,698,275), 유치원은 DKK 19,891(KW 3,282,015)로 유아원의 보육료가 가장 비싸다.

연도별로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를 보면, 공립 보육서비스의 경우, 0~2세 비용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나, 3~5세는 2011년 이후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인상하고 있다. 유아원과 유치원은 2011년 이후 매년 인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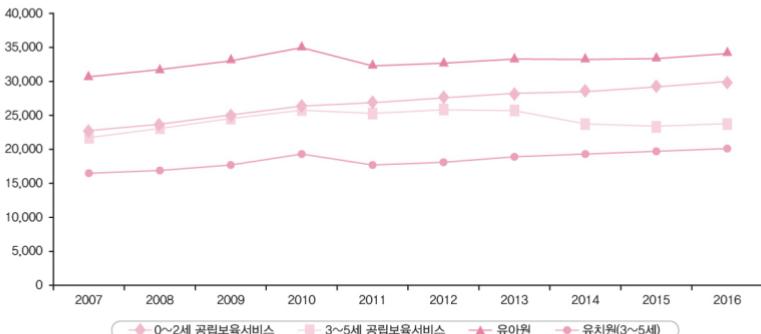
〈표 23〉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립보육서비스*										
0~2세	22,668	23,591	25,008	26,321	26,920	27,557	28,288	28,584	29,267	29,831
3~5세	21,858	22,901	24,414	25,730	25,146	25,912	25,705	23,447	23,216	23,980
유아원	30,973	31,851	33,551	35,344	32,564	32,872	33,612	33,505	33,681	34,535
유치원(3~5세)	16,346	16,787	17,625	19,127	17,863	18,162	19,104	19,299	19,480	19,891
혼합연령기관										
0~2세	30,536	31,289	33,440	36,221	32,812	33,070	-	-	-	-
3~5세	17,060	17,465	18,591	20,997	18,704	18,979	-	-	-	-

주: \* 점심식사비 포함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자료: 〈표 23〉을 그림으로 나타냄.

[그림 14] 연도별 보육료

〈표 24〉는 코펜하겐의 2016년 보육비용 단가를 정리한 것이다. 가정보육의 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월 DKK 3,310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DKK 3,454이다. 점심식사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DKK 2,844 정도이다. 유치원은 DKK 2,551로, 반일제 유치원은 DKK 2,073, 시간제 유치원은 1일 DKK 89, 월 DKK 340이고, 방과후센터는 DKK 1,011이다.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공립이고 5% 정도만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이다.

〈표 24〉 보육·교육 서비스별 보육비용

구분	보육비용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가정보육(dagpleje)	3,310
점심식사를 포함한 보육시설(vuggestue)	3,454(2,844)
유치원(børnehaven)	2,551(2,112)
반일제 유치원	1,595(956)
시간제 유치원	2,073(1,434)
주말보육	가정보육 1일 150, 유치원 1일 114
아간보육(오후 8~익일 6시)	1일 89, 월 340
방과후센터(fritidshjem/KKFO)	1,011

주: ( )괄호 안 단가는 점심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보육비용임.

방과후센터 비용은 2016년 1~6월까지 비용이며, 8월부터 975DDK 임.

자료: 코펜하겐시. (<http://www.kk.dk/inhold/priser-vuggestue-og-dagpleje> 2016. 11. 21. 인출)

덴마크 주별 월 보육료를 시설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가정보육은 Vallensbæk 지역이 2,614덴마크크로네로 가장 저렴하고, Gentofte가 9446덴마크크로네로

지역에 따라 크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아원은 Egedal이 2,641덴마크크로로 가장 낮지만, Glostrup가 4,919덴마크크로네로 지역별 차이가 크게 줄었고, 유치원은 Vallensbæk 1,556덴마크크로네, Gladsaxe 2,664덴마크크로네로 차이가 별로 없다.

〈표 25〉 주별 보육료 단가: 2016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지역	Komm.nr.	가정보육	유아원	유치원
Albertslund	165	3,400	4,848	2,132
Allerød	201	2,836	3,028	1,559
Ballerup	151	3,081	3,152	1,733
Brondby	153	4,010	3,483	1,708
Dragør	155	2,632	3,478	1,648
Egedal	240	3,209	2,641	1,597
Faxe	320	2,785	2,863	1,659
Fredensborg	210	3,111	4,311	1,489
Frederiksberg	147	4,612	2,783	1,503
Frederikssund	250	2,733	3,954	1,789
Furesø Furesø	190	3,001	2,704	1,666
Gentofte	157	9,446	3,339	1,668
Gladsaxe	159	6,001	4,526	2,664
Glostrup	161	2,708	4,919	1,692
Greve	253	2,853	3,388	1,601
Gribskov	270	2,795	2,620	1,640
Guldborgsund	376	2,587	3,019	1,493
Halsnæs	260	3,772	2,802	1,808
ELSNORE Helsingør	217		3,883	1,695
Herlev	163	3,225	2,722	1,671
Hillerød	219	2,826	2,690	1,550
Holbæk Holbæk	316	2,779	2,849	1,679
Hvidovre	167	2,848	2,779	1,794
Høje-Taastrup	169	3,782	3,782	1,711
Hørsholm	223	3,649	4,076	1,587
Ishøj Ishøj	183	2,880	3,283	2,554
Kalundborg	326	2,172	2,221	1,814
Køge	259	2,682	3,659	1,665
Lejre	350	3,359	4,835	1,763
Lyngby-Tårnby	173		3,134	1,726
Næstved	370	3,207	2,771	1,621
Odense	461	2,343	2,634	1,568
Odsherred	306		3,023	1,870
Ringsted	329	2,554	2,904	1,624
Roskilde	265	3,980	3,340	1,592
Rudersdal	230	3,410	2,778	1,568
Røddovre Røddovre	175	2,735	3,065	1,668
Solrød Solrød	269	2,736	2,820	1,538
Tårnby Tårnby	185	2,646	3,733	1,593
Vallensbæk	187	2,614	2,701	1,556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정부 지출규모는 2014년 기준 DKK 253억이다. 지방정부 회계 기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보육시설, 탁아소, 유치원, 연령통합 보육시설 운영비는 연도마다 다소 상이하나 총 DKK 7억(약 1,180억원)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정부의 보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지방정부의 보육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단위 : 십억 덴마크 크로네(DKK), %

구분	운영비 지출	전년도 대비 증감분	전년도 대비 증감률(%)
2008	27.1	0.1	0.4
2009	27.8	0.7	2.7
2010	27.6	-0.2	-0.8
2011	26.6	-1.0	-3.8
2012	26.4	-0.2	-0.8
2013	26.0	-0.4	-1.4
2014	25.3	-0.7	-2.6

주: 연령통합형 시설의 경우 연령별 등록 이동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한 형체에 대한 보조비는 합산되어 계산된 것임.

자료: 덴마크 교육부([www.uvm.dk/Digtibud/Love-og-regler/Statistik](http://www.uvm.dk/Digtibud/Love-og-regler/Statistik) 2016. 7. 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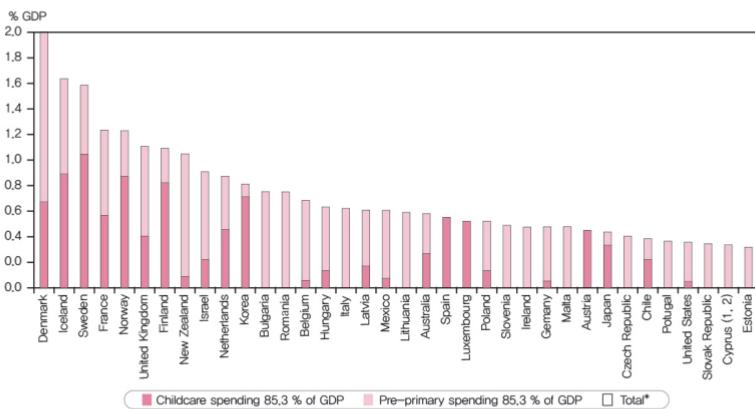
총 보육·교육비용 규모를 보면, 덴마크는 GDP 대비 2.0%로 보육비용이 0.7%, 유아교육이 1.3%를 차지한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 0.8%의 2배 이상 높고, 스웨덴이나 핀란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27〉 GDP 대비 보육교육비용

단위 : %

구분	보육비용	유아교육	총 비용
덴마크	0.7	1.3	2.0
스웨덴	1.1	0.5	1.6
핀란드	0.8	0.3	1.1
OECD 30개국 평균	0.4	0.5	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0 인출).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0. 인출).

[그림 15] GDP 대비 보육교육비용

### 3. 육아와 가족지원

세 계적인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덴마크에서는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날 모든 국민이 폭넓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는 1933년에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성년에 달한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료비·입원비는 전액 무료, 약값·치과치료비·장의비(葬儀費)도 대폭 보조한다. ② 67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미망인 및 폐질자(廢疾者)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된다. ③ 미성년 자녀 교육, 실업 등 생계비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금이 지급된다. 그 밖에 노동자의 산재보험·아동수당·모자수당(母子手當)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이를 위한 비용으로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 44%, 교육 14%, 의료 11% 등 약 70%가 사회보장비용으로 계상되고 있다.

덴마크는 대부분의 사회보장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총 사회

지출액은 2015년 기준 DKK 717백만에 이른다. 분담주체별로는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고용주와 피보험자 등이 부담한다.

〈표 28〉 분담주체별 사회지출 규모

구분	단위: 억 덴마크크로네(DKK)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사회지출 전체	570,770	592,509	636,039	652,262	640,236	652,891	686,830	660,385	717,074	
중앙	250,105	260,736	290,873	310,135	311,658	318,138	326,167	333,309	339,077	
지방정부	154,644	163,216	176,676	188,796	189,378	196,202	197,055	197,964	202,528	
고용주	67,525	73,259	72,885	73,032	72,437	71,376	76,427	70,978	74,117	
피보험자	47,248	49,666	50,101	51,612	51,810	50,876	52,021	49,444	50,967	
순 이자수입	51,249	45,632	45,505	28,687	14,953	16,300	35,159	8,691	50,386	
기족										
전체	65,120	68,367	72,407	73,244	70,721	70,142	70,264	70,188	70,446	
비율(%)	0.11	0.12	0.11	0.11	0.11	0.11	0.10	0.11	0.10	
중앙	28,654	29,897	31,042	31,293	30,616	29,616	29,806	30,105	30,307	
비율(%)	1.62	1.60	1.65	1.64	1.65	1.62	1.66	1.68	1.67	
지방	36,467	38,470	41,365	41,951	40,105	40,526	40,457	40,083	40,139	
비율(%)	4.24	4.24	4.27	4.50	4.72	4.84	4.87	4.94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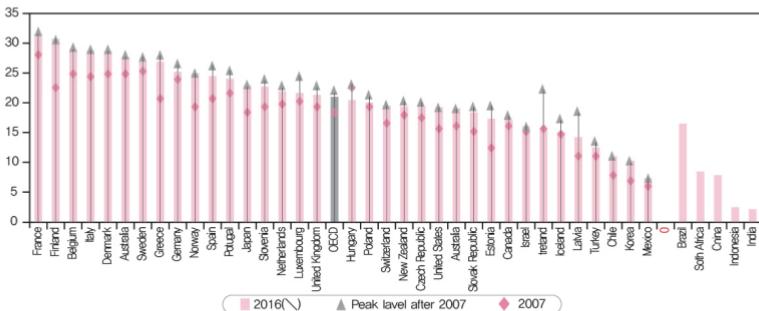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가족분야 사회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0,446억 덴마크 크로네이다. 이중 보육서비스가 전체 중 36.2%를 차지하고, 가족지원 25.4%, 가족수당 23.9%, 출산휴가수당 13.5%, 자녀양육비 지방정부 분담금 1.0% 순이다.

〈표 29〉 가족 분야 사회지출 규모

구분	단위: 억 덴마크크로네(DKK)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65,120	68,367	72,407	73,244	70,721	70,142	70,264	70,188	70,446	(100.0)
보육서비스	24,809	25,485	27,084	27,442	26,476	26,709	26,463	25,917	25,524	(36.2)
가족지원	15,165	16,770	18,166	18,184	17,120	17,177	17,320	17,477	17,898	(25.4)
출산 휴가	9,299	9,712	10,167	10,160	9,891	9,220	9,222	9,470	9,537	(13.5)
가족수당	15,430	15,917	16,486	16,943	16,755	16,457	16,706	16,759	16,804	(23.9)
자녀양육비 지방정부 분담금	418	482	505	516	479	578	553	566	678	(1.0)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7. 25. 인출)

[그림 16]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표 30〉는 0~5세 아동에 대한 사회지출 중 현금혜택과 세제감면 보육서비스, 교육 등의 지출규모를 나타낸다. 덴마크는 보육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혜택 및 세제감면, 기타 수당, 교육 순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보육서비스와 현금혜택 및 세제감면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표 30〉 사회지출 중 현금혜택과 세제지원, 보육서비스 규모: 2011

단위: USD

구분	현금지원 및 세제감면	보육서비스	기타 수당	교육	전체
덴마크	25,011	30,347	14,975	220	70,553
노르웨이	40,164	49,114	9,168	-	98,446
아이슬란드	21,440	44,515	6,168	40	72,163
스웨덴	23,737	38,409	6,426	-	68,572
핀란드	23,237	32,945	6,306	-	62,48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2. 30. 인출)

## 가. 아동 수당

덴마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각 지자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한다. 보조금은 면세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원

대상은 아동 연령이 생후 24주 이상 의무교육 연령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이다.

지원자격은 덴마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취업한 경우로, 덴마크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1~3년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이하는 전체 혜택의 25%, 1년은 50%, 18개월 75%, 2년 이상은 100%를 지원받는다. 아동은 반드시 덴마크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는 과세법에 따라 덴마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까지이다.

〈표 31〉 덴마크 아동 혜택 및 아동수당 유형

구분	수혜대상	지원비용 수준
아동혜택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연령에 따라 지원비용 수준 다름</li><li>- 0~2세: 분기당 4,470DKK(€599)</li><li>- 3~6세: 분기당 3,537DKK(€474)</li><li>- 7~14세: 분기당 2,784DKK(€373)</li><li>- 15~17세: 월 928DKK(€124)</li></ul>
일반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및 기본 퇴직연금 수 령자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 5,432DKK(월 406DKK)</li></ul>
보조적 아동수당	일반 아동수당을 받는 한부 모 가정에 지급, 자녀수와 상관없이 보조적 아동수당 은 한 자녀에게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구당 월 413DKK(약 8만5백원)</li></ul>
출생 및 입양 보조금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 우 7세까지 1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 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 1인당 분기당 2,239DKK(€300)</li><li>- 외국인 자녀 입양보조금 51,583DKK(€6,912)</li></ul>
특별 아동수당	부모가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 아동수당과 보조 아동수당을 합한 것과 같음</li><li>- 일반 아동수당: 1,358DKK(€182), 분기당 453DKK</li><li>- 보조 아동수당 분기당 1,384DKK(€185)~월 461DKK (€62)</li><li>- 보조아동수당은 아동 수에 관계없이 1가구에 지급</li><li>- 자격조건: 매년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 덴마크 국적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li></ul>
장애아동 수당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애아동 치료 및 훈련 비용 지원: 월 최대 29,274[DKK](€3,923)</li><li>- 교통비 및 의약품 구입비 연 4,656[DKK](€624)</li></ul>

자료: MISSOC <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16. 7. 12 인출.

2016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은 분기마다 DKK 4,470(€599)를 받으며 3-6세의 자녀와 7-14세 자녀를 둔 가족은 각각 분기별 DKK 3,537(€474), DKK 2,784(€373)를 받는다.

고소득 가정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 혜택이 줄어드는데, 가구소득이 DKK 732,900(€98,211)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의 2%를 삭감하게 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도 일반 가족혜택을 받고, 연금수급자인 경우, 특별수당은 분기당 DKK 3,471(€465) 매달 DKK 1,157(€155)를 받는다. 부모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당 DKK 1,358(€182)과 일반 혜택으로 아동 1인당 분기별로 DKK 450(€60) 또는 월 DKK 150(€20)를 받는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아동 1인당 분기별로 DKK 3,921(€525) 및 월 DKK 1,307(€175)를 받는다. 부 또는 모가 없는 아동에게 추가 특별수당이 제공되는데, 분기별 DKK 7,845(€1,051) 또는 월 DKK 2,615(€350)이 추가 지원된다.

한 가구당 최대 3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액이 출산수당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자녀수당은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순 운영비의 8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설명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 가족수당은 570,819가구이고, 일반 아동수당은 132,850가구, 보조적 아동수당 132,464가구, 특별 아동수당 19,147가구, 입양 아동수당 8,185가구이다.

〈표 32〉 아동혜택 및 아동수당 지원규모

단위: 가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수당	684,682	690,049	693,670	693,066	589,831	582,245	579,233	574,167	570,819
일반 아동수당	125,878	127,541	130,673	131,841	131,287	132,138	129,043	132,655	132,850
보조적 아동수당	124,363	126,231	129,552	130,836	130,384	131,367	128,484	132,204	132,464
특별 아동수당	28,065	26,568	25,352	23,889	22,563	20,997	19,443	19,613	19,147
입양 아동수당	9,345	9,486	9,446	9,431	9,312	9,046	8,820	8,593	8,185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표 33〉 아동혜택 및 아동수당 지원규모

구분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수당	1,200,251	1,206,364	1,207,823	1,203,368	988,567	974,711	968,073	958,487	951,223	
일반 이동수당	194,084	196,400	200,294	200,593	198,453	198,473	193,830	198,321	197,501	
특별 이동수당	41,596	38,957	36,069	33,591	31,434	29,021	26,661	26,402	25,485	
입양 이동수당	9,544	9,685	9,593	9,571	9,436	9,144	8,914	8,685	8,276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표 34〉는 앞서 제시한 아동수당 지원자 수를 아동 기준으로 산출한 표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있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가족수당이 DDK 3,055,496,000이고, 일반 아동수당은 DDK 264,391, 보조적 아동수당 DDK 180,776, 특별 아동수당 DDK 92,771, 입양 아동수당 DDK 18,255이다. 지원 아동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원단가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지급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표 34〉 보조금 지급 금액

구분	단위: 덴마크 달러(1000DKK)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족수당	3,333,920	3,514,309	3,570,958	3,664,114	3,051,967	3,055,819	3,048,284	3,055,150	3,055,496	
일반 이동수당	214,869	223,752	234,817	244,086	247,081	253,153	251,056	261,522	264,391	
보조적 아동수당	140,048	146,519	155,049	162,095	165,344	170,705	169,655	177,768	180,776	
특별 아동수당	122,883	113,759	113,227	109,276	104,787	99,746	93,409	94,843	92,771	
입양 아동수당	17,399	18,169	18,599	19,190	19,299	19,209	19,026	18,866	18,255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 휴기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32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눠서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산후 46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출산휴가와 부성/모성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기여금액의 두 배가 ATP(arbejdsmarkedets tillægspræstation, ATP: 보완적 연금제도)에 납부되는데, 수급자가 기여금의 1/3을, 정부·지방정부가 2/3을 부담한다. 정부지원 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지 않은 한 젊은 부모가 휴가기간 만료 후에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며,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ATP에 기여하면서 일종의 공적 급여를 인출할 수 있다.

보조금은 주당 최대 DKK 4,180(€560) 또는 시간당 DKK 112.97(€15)(주당 37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한다.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지급되는데, 지급 금액은 출산수당에 준하며, 지난 12개월동안의 고용조건에 근거하여 금액이 결정된다.

〈표 35〉 출산휴가

구분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자 수	64,486	65,616	63,457	63,990	59,256	58,293	56,267	57,547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용).

〈표 36〉 기간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2014

구분	아동 수	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출산휴가
전체	57,547	21,974	3,241	18,731
0~12주	12,443	523	501	22
13~24주	938	1,529	980	547
25~36주	3,198	2,533	457	2,075
37~48주	30,930	3,542	284	3,259
49~60주	7,671	4,543	381	4,160
60주 이상	2,367	9,304	638	8,668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용).

## 맺는 말

**덴**마크는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간에 걸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는 고용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조명을 받아 왔으나, 보육유아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영아 중심의 유아원과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 방과후 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 등을 제공한다.

둘째, 덴마크 보육·교육서비스의 특징은 공립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보육시설은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유치원은 62.8%로 반수가 넘는다. 민간 시설의 경우도 지역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급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된다. 특히 민간시설 중 5% 정도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특성에 따라 부모보조금을 통해 부모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다른

---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덴마크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2.0%이다. 이는 보육교육서비스가 공립 중심의 공급체계로 국가부담이 크다.

넷째, 덴마크 0~2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OECD 평균 29.8시간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1일 평균 6시간 20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우리나라보다는 짧은 편이다. 덴마크의 경우 0~2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0세 3.5%, 1세 17.4%, 2세 18.8%로 낮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모 자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 수당은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의 수입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된다. 이 외에도 일반 아동수당, 보조적 아동수당, 출생 및 입양 보조금, 특별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등이 지원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어 있다.

---

## • 참고문헌

- 문무경(2013). 덴마크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외교부(2016). 덴마크 개황 자료.
- 윤성현(2013).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덴마크. 한국법제연구원.
- 이희숙(2013). 세계를 감동시킨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 37. 이담북수.
- 조기현(2013). 외국의 지방재정제도-덴마크와 스웨덴의 형평화보조금. 한국법제연구원.
- Children and Youth Committee Municipality of Copenhagen(2016). Private childcare Pedagogical supervision and financial contribution.
- Danish Ministry for Children and Education(2012). Fakta om dagtilbud.
- EACEA(201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 in Europe National Information Sheets 2014/15.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 Oberhuemer, P., Schreyer, I., & Neuman, M. J. (2010). *Professio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 European profiles and perspectives*. Barbara Budrich.

---

## 〈온라인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2016. 7. 25 인출)

덴마크 교육부.

<http://www.uvm.dk/Dagtilbud/Love-og-regler/Statistik> (2016. 7. 25 인출)

<http://www.uvm.dk/publikationer/engelsksprogede/2003-the-folkeskole-consolidation-act> (2016. 7. 20 인출)

<http://uvm.dk/Uddannelser/Paa-tvaers-af-uddannelserne/Overblik-over-det-danske-uddannelsessystem/Det-ordinaere-uddannelsessystem> (2016. 7. 25 인출)

덴마크 대사관 홈페이지. <http://dnk.mofa.go.kr>

덴마크 법령 정보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82051> (2016. 7. 20 인출)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2016. 7. 25 인출)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2016. 7. 25 인출)

유럽연합통계(Eurostata).

<http://ec.europa.eu/eurostat> (2016. 7. 25 인출)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init=1&plugin=1&pcode=tec00115&language=en> (2016. 7. 25 인출)

코펜하겐시. <http://www.kk.dk/indhold/priser-vuggestue-og-dagpleje> (2016. 11. 20 인출)

MISSOC. [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_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_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16. 7. 12 인출)

OECD(2016).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

<http://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19991290.htm> (2016.  
11. 21 인출)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0, 2016. 12. 30 인출)

〈부록 표 1〉 지역별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

단위: 덴마크 크로네(DDK)

구분	유아원	시립 보육시설 <sup>1)</sup>		유치원 (3-5세) <sup>1)</sup>	점심급식비	
		0~2세	3~5세		0~2세 <sup>2)</sup>	3~5세 <sup>2)</sup>
Copenhagen	34,128	39,720	-	22,944	7,320	7,668
Frederiksberg	32,952	38,160	-	17,760	6,240	6,168
Dragør	36,289	31,581	-	19,778	9,911	9,911
Tårnby	37,056	31,752	-	19,116	0	8,652
Albertslund	40,392	36,048	-	23,592	0	0
Ballerup	35,328	35,100	-	20,796	6,624	6,816
Brøndby	36,300	37,884	-	20,496	7,356	6,156
Gentofte	35,868	35,868	20,016	20,016	8,880	8,880
Gladsaxe	37,440	37,440	-	25,140	0	0
Glostrup	40,608	32,496	-	20,304	0	7,824
Herlev	32,664	35,532	-	19,956	4,680	4,680
Hvidovre	33,348	34,176	21,528	21,528	7,392	6,948
Høje-Taastrup	37,200	37,200	20,520	20,520	0	7,584
Ishøj	33,732	30,780	-	25,008	0	0
Lyngby-Taarbæk	35,145	35,145	-	20,570	6,160	6,666
Rødovre	35,046	32,824	20,009	20,009	0	7,920
Vallensbæk	32,400	31,368	-	18,672	0	8,292
Allerød	34,936	34,034	-	18,711	10,406	10,406
Egedal	31,692	34,056	19,164	19,164	6,720	6,720
Fredensborg	38,784	35,184	-	17,868	7,044	7,044
Frederikssund	37,716	32,796	-	21,468	6,636	6,636
Furesø	32,448	34,860	-	19,992	3,444	6,588
Gribskov	31,440	33,540	-	19,680	6,000	6,000
Halsnæs	33,600	37,140	-	21,660	0	5,244
Helsingør	37,565	..	-	20,295	0	5,621
Hillerød	32,268	33,912	-	18,588	8,640	8,640
Hørsholm	38,040	36,780	-	19,020	6,072	6,672
Rudersdal	33,330	36,080	-	18,810	7,260	8,470
Bornholm	30,228	25,828	-	19,500	6,576	6,576
Greve	36,641	35,508	-	18,953	0	5,148

구분	유아원	시립 보육시설 <sup>1)</sup>		유치원 (3~5세) <sup>1)</sup>	점심급식비	
		0~2세	3~5세		0~2세 <sup>2)</sup>	3~5세 <sup>2)</sup>
Køge	36,720	32,160	-	19,920	8,628	6,612
Lejre	36,993	32,934	-	19,393	0	7,931
Roskilde	35,868	35,868	35,868	19,104	6,480	6,480
Solrød	34,859	32,857	-	18,447	7,557	7,557
Faxe	34,356	33,420	33,420	19,908	7,380	7,380
Guldborgsund	34,908	31,044	-	17,916	5,616	5,616
Holbæk	34,188	33,348	-	20,148	7,020	7,020
Kalundborg	26,653	26,059	-	21,769	5,896	5,896
Lolland	34,980	28,488	-	20,268	6,720	6,720
Næstved	30,481	29,128	29,128	17,831	5,137	5,137
Odsherred	34,925	32,010	-	22,440	6,600	6,600
Ringsted	34,562	30,646	-	19,492	7,500	7,500
Slagelse	35,700	29,448	-	17,004	6,168	6,168
Sorø	34,397	26,466	-	17,204	4,851	4,851
Stevns	35,079	34,144	-	19,767	3,905	3,905
Vordingborg	31,988	33,253	-	18,634	7,200	7,200
Assens	36,564	29,238	-	19,822	0	5,500
Faaborg-Midtfyn	32,912	28,908	-	19,415	6,391	6,391
Kerteminde	33,605	28,347	28,347	19,140	5,434	5,434
Langeland	-	28,633	28,633	22,869	5,786	5,786
Middelfart	35,816	28,677	-	20,581	5,687	5,687
Nordfyns	33,880	24,310	-	19,580	5,852	5,852
Nyborg	35,002	28,666	-	18,898	6,000	6,000
Odense	31,603	28,116	28,116	18,821	6,369	6,369
Svendborg	35,453	29,931	-	20,526	7,590	7,590
Ærø	28,292	30,240	-	22,165	0	0
Billund	33,880	29,315	-	19,635	6,160	6,160
Esbjerg	31,716	27,936	27,936	18,276	5,928	5,928
Fanø	18,051	18,051	-	18,051	1,932	1,008
Fredericia	33,858	28,440	-	20,218	6,358	6,358
Haderslev	30,184	26,037	-	19,283	4,070	4,070
Kolding	39,622	33,187	-	21,131	0	6,853
Sønderborg	33,539	29,381	-	20,416	4,521	4,521
Tønder	27,720	27,720	27,720	23,160	4,536	4,536

구분	유아원	시립 보육시설 <sup>1)</sup>		유치원 (3-5세)	점심급식비	
		0-2세	3-5세		0~2세 <sup>2)</sup>	3~5세 <sup>2)</sup>
Varde	41,525	28,105	28,105	18,590	0	5,720
Vejen	28,488	28,488	-	19,356	0	6,360
Vejle	37,920	30,360	21,420	21,420	5,760	5,760
Aabenraa	32,747	29,876	-	19,195	5,214	5,214
Favrskov	33,220	26,807	26,807	18,535	4,400	4,400
Hedensted	34,100	30,778	30,778	21,439	5,676	5,676
Horsens	33,946	30,096	-	17,765	0	5,181
Norddjurs	31,500	30,276	-	17,208	5,400	5,400
Odder	33,737	32,109	32,109	18,942	4,840	4,840
Randers	27,228	27,444	27,444	18,048	6,228	6,228
Samsø	30,768	30,768	30,768	23,640	0	0
Silkeborg	33,792	28,743	17,424	17,424	6,457	6,457
Skanderborg	35,244	30,173	-	19,877	6,050	6,050
Syddjurs	31,284	30,732	-	17,532	5,100	5,100
Aarhus	38,423	31,064	31,064	20,185	4,356	4,356
Herning	31,999	25,564	25,564	17,754	5,940	5,170
Holstebro	33,825	28,600	28,600	18,744	6,556	7,007
Ikast-Brande	33,000	29,018	-	19,855	0	6,105
Lemvig	37,169	30,602	30,602	22,429	5,401	5,401
Ringkøbing-Skjern	31,130	25,960	25,960	19,338	5,379	5,379
Skive	35,448	27,696	27,696	19,452	0	5,400
Struer	32,384	25,751	-	16,610	4,730	4,730
Viborg	31,471	30,239	30,239	17,281	5,698	5,698
Brønderslev	31,460	26,785	-	16,874	0	5,676
Frederikshavn	29,810	26,510	-	17,655	0	5,665
Hjørring	29,491	29,194	-	18,469	5,588	5,742
Jammerbugt	30,921	29,381	19,052	19,052	0	5,544
Læsø	38,568	..	-	25,140	0	0
Mariagerfjord	36,003	28,985	-	20,944	0	8,503
Morsø	30,525	26,675	-	21,230	0	4,400
Rebild	33,110	29,370	-	18,920	5,445	5,445
Thisted	38,071	29,128	29,128	19,030	0	4,950
Vesthimmerlands	27,830	27,830	-	18,865	6,028	6,028
Aalborg	35,310	29,260	-	20,405	7,480	5,280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

### 양미선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아동학 전공 학사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아동학 전공 석사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  
전 경희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실장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0

##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

발 행 인 •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 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 역 • 양미선  
발 행일 • 2017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http://www.kicce.re.kr  
대 표 전 화 • 02) 398-7700  
팩 스 • 02) 398-7798  
인 쇄 •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2

---

ISBN 979-11-87952-12-1 93330

정가: 6,000원

##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제 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2006) | 유희정  
제 2권 스웨덴의 육아정책 (2006) | 문무경  
제 3권 호주의 보육정책 (2007) | 서문희  
제 4권 영국의 육아정책 (2007) | 문무경  
제 5권 미국의 육아정책 (2008) | 조은경 · 김은영  
제 6권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2008) | 신나리 · 조혜주  
제 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 (2009) | 이윤진 · 송신영  
제 8권 프랑스의 육아정책 (2009)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제 9권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2010) | 김은설 · 김문정  
제10권 독일의 육아정책 (2010) | 이명환 · 박수연  
제1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Ⅱ) (2011) | 유해미 · 유희정 · 장경희  
제12권 대만의 보육정책 (2011) | 이정림 · 邱志鵬  
제13권 호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3) | 서문희 · 이해민  
제14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2013) | 이정원 · 이세원  
제15권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2015) | 최윤경 · 김윤환 · 이해민  
제16권 아일랜드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5) | 최은영 · 장혜진 · 송신영  
제1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Ⅱ) (2015) | 이윤진 · 정도상  
제18권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2016) | 권미경 · 이강근  
제19권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2016) | 강은진

*Child Care*

*Education*

*Policy*

